

접 수

회계과 - 21486
(2023. 5.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수 신: 보령시장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 기간: 2023. 4. 21.(금) ~ 5. 4.(금) [14일 간]

○ 검사 위원

- 대표위원: 성 태 용(보령시의회 의원)
- 위 원: 김 재 관(보령시의회 의원)
- 위 원: 김 신 환(전직 공무원)
- 위 원: 김 장 화(전직 공무원)
- 위 원: 한 봉 진(전직 공무원)
- 위 원: 박 병 혁(공인 회계사)
- 위 원: 서 용 덕(공인 세무사)

보령시결산검사위원

목 차

• 결산검사 의견서	1
• I . 결산검사 결과	3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5
나. 일반회계	6
다. 특별회계	9
2. 예비비 지출	12
3. 기금 결산	14
4.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15
5. 재무제표 결산	16
6. 성과보고서 결산	16
7. 성인지예산 결산	17
• II . 개선해야 할 사항	19
• III . 모범사례	59

결 산 검 사 의 건 서

보령시장 귀하

2023년 5월 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로부터 보령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14일 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결산 검사 위원

대 표 위 원	성 태 용
위 원	김 재 관
위 원	김 신 환
위 원	김 장 화
위 원	한 봉 진
위 원	박 병 혁
위 원	서 용 덕

(성태용)
(김재관)
(김신환)
(김장화)
(한봉진)
(박병혁)
(서용덕)

I . 결산검사 결과

BORYEONG

가. 총 괄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91,712,783,116원이고 세입은 1,424,189,524,979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133,197,912,244원이 지출되어 결산상 잉여금은 290,991,612,735원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규모

(단위: 천원)

연 도 별		2021년도	2022년도	증 감 율
구 분				
예 산 현 액(A)		1,201,565,435	1,391,712,783	증 15.82%
결 산 액	세 입(B)	1,223,940,515	1,424,189,525	증 16.36%
	세 출(C)	988,662,072	1,133,197,912	증 14.61%
	결산상 잉여금 (B-C)	235,278,443	290,991,613	증 23.67%

-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290,991,612,73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며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90,360,317,868원
- 사고이월 17,274,645,877원
- 계속비이월 90,627,836,630원
- 보조금 반납금 21,433,589,05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295,223,305원이다.

나. 일반회계

1) 총괄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30,798,922,997원이며 수납액은 1,243,240,053,554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2,441,130,557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 지출액은 1,011,380,674,518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231,859,379,036원임.

일반회계 결산 총규모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 (A)	세출 (B)	결산상 잉여금 (C=A-B)	비고
당해연도 ㉠	1,230,798,923	1,243,240,054	1,011,380,675	231,859,379	
전년도 ㉡	1,043,965,551	1,060,283,251	882,837,265	177,445,986	
증감 ㉢=㉠-㉡	186,833,372	182,956,803	128,543,410	54,413,393	

-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231,859,379,03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80,954,986,898원
- 사고이월 15,668,984,957원
- 계속비이월 76,068,806,710원
- 보조금 반납금 19,392,921,90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773,678,567원이다.

2) 세 입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230,798,922,997원 대비 12,441,130,557원이 증가한 1,243,240,053,5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비 율	
						C/A	C/B
합 계	1,230,798,923	1,266,139,645	1,243,240,054	1,011,865	21,887,726	101	96.2
지 방 세	73,277,502	80,719,348	76,361,627	486,073	3,871,648	104.2	94.6
세 외 수 입	52,529,726	74,865,985	56,324,115	525,792	18,016,078	105.2	75.2
지 교 부 방 세	502,660,000	502,139,540	502,139,540	-	-	99.9	100
조 교 부 금 등	36,806,000	45,765,409	45,765,409	-	-	124.3	100
보 조 금	364,041,473	362,057,064	362,057,064	-	-	99.5	100
지 방 채	1,000,000	1,000,000	1,000,000	-	-	100	100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199,484,222	199,592,299	199,592,299	-	-	100.1	100

3) 세 출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30,798,922,997원에서 1,011,380,674,518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예산현액대비 82.17%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합 계	1,230,798,923	1,011,380,674	174,859,983	18,405,706	26,152,560
일 반 공 공 행 정	94,422,905	86,971,809	5,382,981	14,037	2,054,078
공공질서 및 안전	56,700,142	35,895,591	20,269,596	79,479	455,476
교 육	6,528,281	6,398,449	-	7,699	122,133
문 화 및 관 광	167,091,313	114,546,557	45,963,639	4,591,425	1,989,692
환 경	81,437,118	71,112,342	5,216,909	2,915,667	2,192,200
사 회 복 지	231,172,873	217,554,767	5,819,359	4,960,169	2,838,578
보 건	17,624,221	15,593,197	565,135	903,459	562,430
농 립 해 양 수 산	201,134,704	167,862,041	24,268,430	3,430,896	5,573,337
산 업 · 중 소 기 업 및 에 너 지	65,165,441	55,598,067	8,070,587	920,984	575,803
교 통 및 물 류	40,031,838	32,162,023	5,113,806	240,719	2,515,290
국 토 및 지역개발	156,685,689	99,894,847	54,182,941	323,683	2,284,218
예 비 비	200,000	-	-	-	200,000
기 타	112,604,398	107,790,984	6,600	17,489	4,789,325

다. 특별회계

1) 총괄

- 2022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0,913,860,119원이며 수납액은 180,949,471,425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0,035,611,306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 지출액은 121,817,237,726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59,132,233,699원임.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 (A)	세출 (B)	결산상 잉여금 (C=A-B)	비고
당해연도 ㉠	160,913,860	180,949,472	121,817,238	59,132,234	
전년도 ㉡	157,599,884	163,657,265	105,824,807	57,832,458	
증감 ㉢=㉠-㉡	3,313,976	17,292,207	15,992,431	1,299,776	

-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59,132,233,69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9,405,330,970원
 - 사고이월 1,605,660,920원
 - 계속비이월 14,559,029,920원
 - 보조금 반납금 2,040,667,15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521,544,738원이다.

2) 세 입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60,913,860,119원 대비 20,035,611,306원이 증가한 180,949,471,42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2% 증가하였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비 율	
						C/A	C/B
합 계	160,913,860	185,013,596	180,949,471	52,552	4,011,573	112.5	97.8
상 수 도 사 업	75,262,586	86,677,936	84,590,878	42,128	2,044,930	112.4	97.6
하 수 도 사 업	62,855,320	73,187,621	72,272,048	10,424	905,149	115	98.7
의 료 보 호 기 금 사 업	2,319,000	2,314,316	2,314,316	-	-	99.8	10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017,000	3,492,944	3,492,944	-	-	115.8	10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4,815,088	4,951,177	4,951,177	-	-	102.8	100
발전소주변지역 자원사업 용자금	1,651,000	2,497,133	2,497,133	-	-	151.2	100
주 택 사 업	347,000	342,508	341,154	-	1,354	98.3	99.6
장 기 미 집 행 도시계획시설	108,462	108,462	108,462	-	-	100	100
주 차 장 설 치 사 업	650,122	1,611,708	551,568	-	1,060,140	84.8	34.2
여 객 자 동 차 공 영 터 미 널	193,538	194,910	194,910	-	-	100.7	100
보 령 댐 주 변 지역 지원사업	517,000	652,860	652,860	-	-	126.3	100
학 교 급 식 지 원 센 터	9,177,744	8,982,021	8,982,021	-	-	97.9	100

3) 세 출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0,913,860,119원에서 121,817,237,726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예산현액대비 132%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보조금반납금 (D)	집 행 잔 액 (A-B-C-D)
합 계	160,913,860	121,817,238	25,570,022	1,357,736	12,168,864
상 수 도 사 업	75,262,586	61,098,838	11,677,681	79,680	2,406,387
하 수 도 사 업	62,855,320	41,480,449	12,988,760	1,219,647	7,166,464
의 료 보 호 기 금 사 업	2,319,000	2,243,390	-	54,127	21,483
농 공 지 구 조 성 관 리 사 업	3,017,000	2,950,883	37,785	-	28,332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4,815,088	4,132,158	-	-	682,93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651,000	490,000	-	-	1,161,000
주 택 사 업	347,000	68,099	-	-	278,901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108,462	108,462	-	-	-
주 차 장 설 치 사 업	650,122	516,207	26,775	1,326	105,814
여 객 자 동 차 공 영 터 미 널	193,538	170,799	-	-	22,739
보 령 댐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517,000	464,493	-	-	52,507
학 교 급 식 지 원 센 터	9,177,744	8,093,460	839,021	2,956	242,307

- 한발대비 용수개발(보조) 사업 외 17건 2,608,70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284,271,680원을 지출하였으며 324,43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연번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합 계			2,608,703	2,284,272	-	324,431
1	지 방 선 거	기 타 부 담 금	100,629	100,629	-	-
2	설 해 대 책 추	재 료 비	100,000	87,467	-	12,533
3	2 0 2 2 보 령 해 양 머 드 박 람 회 개 최	출 연 금	700,000	700,000	-	-
4	코 로 나 1 9 식 료 품 지 원	의 료 및 구 료 비	100,000	87,504	-	12,496
5	코 로 나 1 9 식 료 품 지 원	의 료 및 구 료 비	100,000	83,754	-	16,246
6	코 로 나 1 9 사 망 자 장 례 지 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98,441	98,441	-	-
7	재 해 주 택 구 호 및 복 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4,000	11,644	-	12,356
8	한 발 대 비 용 수 개 발 (보 조)	사 무 관 리 비	3,750	3,750	-	-
9	수 리 시 설 및 방 조 제 개 보 수	사 무 관 리 비	38,746	18,000	-	20,746
10	수 리 시 설 및 방 조 제 개 보 수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83	283	-	-
11	가 목 극 복 긴 급 대 책 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50,000	150,000	-	-
12	가 목 극 복 농 업 용 수 개 발 (보 조)	시 설 비	198,000	135,641	-	62,359

13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5,106	45,106	-	-
14	소규모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391,415	295,405	-	96,010
15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160,072	147,639	-	12,433
16	임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5,158	2,274	-	12,884
17	농업호우피해 피해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93,103	73,735	-	19,368
18	방역기반지원 (A I 방역대책비)	사무관리비	290,000	243,000	-	47,000

- 2022회계연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기금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기금 종류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41,056,492	25,634,994	39,514,970	13,879,976	66,691,4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094,610	23,394,701	37,841,903	12,447,202	47,489,311
재난관리기금	2,116,798	469,325	684,211	214,886	2,586,123
체육진흥기금	1,297,604	2,882	2,882	-	1,300,486
자활기금	626,922	△39,150	19,050	58,200	587,772
노인복지기금	868,976	△7,091	12,909	20,000	861,885
양성평등기금	743,214	△7,462	2,538	10,000	735,752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933,294	89,120	154,077	64,957	1,022,414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400,000	-	-	-	400,000
투자유치기금	5,671,650	△445,984	45,408	491,392	5,225,666
농어촌진흥기금	197,042	2,375	60,714	58,339	199,417
식품진흥기금	6,106,382	176,278	691,278	515,000	6,282,660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 2022회계연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730,664,194원임.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단위: 천원)

관	서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A+B)
					계 (B=C-D)	증 가 액 (C)	지 출 액 (D)	
			합 계	1,750,175	980,489	28,547,105	27,566,616	2,730,664
1	본	청		1,617,916	1,016,954	26,473,211	25,456,257	2,624,870
2	의	회	사 무 국	8,777	982	139,744	138,762	9,759
3	보	건	소	-	-	920,726	920,726	-
4	농	업	기 술 센 터	91,439	△24,140	540,960	565,100	67,299
5	원	산	도 출 장 소	685	3,184	58,341	55,157	3,869
6	웅	천	읍	7,841	2,486	93,714	91,228	10,327
7	주	포	면	-	-	9,837	9,837	-
8	주	교	면	2,060	333	19,490	19,157	2,393
9	오	천	면	28	358	7,362	7,004	387
10	천	북	면	1,758	△1,746	36,941	38,687	12
11	청	소	면	0	1,569	28,195	26,626	1,569
12	청	라	면	22	△22	25,096	25,118	-
13	남	포	면	10,742	△10,293	39,892	50,185	449
14	주	산	면	4	1,012	19,113	18,101	1,015
15	미	산	면	5,944	△5,402	22,530	27,932	542
16	성	주	면	10,317	△6,230	17,151	23,381	4,087
17	대	천	1 동	19	29	31,456	31,427	48
18	대	천	2 동	1,855	350	17,405	17,055	2,205
19	대	천	3 동	311	951	16,435	15,484	1,262
20	대	천	4 동	427	△78	14,023	14,101	349
21	대	천	5 동	30	192	15,483	15,291	222

5

재무제표 결산

- 2022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대비 309,28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00,554백만원 감소함.

재무제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A)	총부채 (B)	순자산 (C=A-B)	총수익 (A)	총비용 (B)	운영차액 (C=B-A)
당 해 연 도 ㉠	4,380,365	60,176	4,320,189	1,067,256	830,638	(236,618)
전 년 도 ㉡	4,068,558	57,652	4,010,906	914,793	778,728	(136,065)
증 감 ㉢=㉠-㉡	311,808	2,523	309,285	152,464	51,910	(100,554)

6

성과보고서 결산

(단위: 개, 천원)

실 국 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 산 액	전 년 도 결 산 액	비교 증감
		개 수	지표수	초 과 달 성	달 성	미달성			
합 계	7	121	209	15	136	58	1,030,618,625	906,056,699	124,561,926
기 획 감 사 실	1	2	6	0	3	3	50,580,537	20,586,994	29,993,543
홍보미디어실	1	2	8	1	6	1	5,366,366	5,225,184	141,182
안 전 행 정 국	1	42	59	5	36	18	446,154,840	389,127,890	57,026,950
경 제 도 시 국	1	38	69	8	35	26	285,588,050	274,584,443	11,003,607
해양수산관광국	1	15	27	1	24	2	100,828,374	88,271,604	12,556,770
직 속 기 관	1	21	37	0	30	7	114,793,633	107,888,206	6,905,427
출 장 소	0	0	0	0	0	0	1,686,292	1,182,761	503,531
의 회 사 무 국	1	1	3	0	2	1	3,121,416	2,518,768	602,648
읍면동사무소	0	0	0	0	0	0	22,499,117	16,670,849	5,828,268

가. 총괄

(단위: 개, 천원, %)

회 계 별	사 업 개 수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합 계	79	76,068,121	61,943,583	81.43
일 반 회 계	78	76,058,121	61,933,583	81.43
기 타 특 별 회 계	-	-	-	-
기 금	1	10,000	10,000	100

나. 사업별

(단위: 개, 천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합 계		79	76,068,121	61,943,584	81.43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소 계	13	15,973,039	15,784,812	98.82
	일 반 회 계	12	15,973,039	15,784,812	98.82
	기 타 특 별 회 계	-	-	-	-
	기 금	1	10,000	10,000	100
성별영향 평가사업	소 계	56	56,958,580	43,214,519	75.87
	일 반 회 계	56	56,958,580	43,214,519	75.87
	기 타 특 별 회 계	-	-	-	-
	기 금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10	3,136,502	2,944,253	93.87
	일 반 회 계	10	3,136,502	2,944,253	93.87
	기 타 특 별 회 계	-	-	-	-
	기 금	-	-	-	-

Ⅱ. 개선해야 할 사항

BORYEONG

1

전체 내역

의견번호	개 선 사 항	비 고
1	해수욕장 위탁시설 관련 세입·세출 예산 편성 부적정	
2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3	세외수입 징수관리 철저	
4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입금 환급 발생 최소화	
5	의존재원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6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 최소화 노력	
7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	
8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 변경 지양	
9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최소화 노력	
10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1억 이상) 과다 발생	
11	주요업무(시설공사 20억, 조사·연구 용역 3억 이상) 적극 추진	
12	예산 전용(1천만원 이상) 지양	
13	세출예산 과도한 이월처리	
14	예산 이월에 따른 사고이월 처리 절차 누락	
15	특별회계(상·하수도) 이월사업비 이월사유 누락	
16	운용 부진한 기금 활성화 노력	

1. 해수욕장 위탁시설 관련 세입·세출 예산 운용 부적정

가. 현 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구분	예산구분	예산액 (A)	결산액 (B)	차액 (C=A-B)	비고
해수욕장경영과	세입	소계	161,000	176,231	△15,231	
		본예산	121,000	167,117	△46,117	
		3회추경	40,000	9,114	30,886	
	세출	소계	80,000 *대전 55,000 *무창포 25,000	65,876 *대전 56,222 *무창포 9,654	14,124	
		1회추경	75,000 *대전 50,000 *무창포 25,000			
		3회추경	5,000 *대전 5,000			
원산도출장소 (現 원산출장소)	세입	소계	80,000	85,165	△5,165	
		1회추경	80,000	85,165	△5,165	
	세출	소계	45,000	44,741	259	
		2회추경	30,000			
		3회추경	15,000			

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형식면에서 1년동안 수입예산인 세입을 세출이라는 건적을 통하여 배분하여 놓은 것으로 일정기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로 연중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추가경정예산을 가정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수욕장경영과의 경우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3회추경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1회추경과 3회추경에 편성함으로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3회추경에 추가세입을 편성하면서도 세입전망을 소홀히 하여 세입예산 대비 15,231천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세출예산은 55,000천원임에도 56,222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1,222천원을 초과 지출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원산도출장소의 경우 원산도에 소재한 이용자 편의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 세입예산은 1회추경에 세출예산은 2회추경과 3회추경에 편성함으로 세입 세출예산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 예산대비 세출의 초과로 민간위탁금은 추가로 3회추경에 편성하면서도 초과된 세입 5,165천원에 대하여는 미편성하여 예산운용에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정한 단일예산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세입과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염두에 두지 말고 모두 본예산에 편성하여 세입 세출예산을 운용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되 세출예산만 반영하지 말고 세입 예산도 반영하여 주시고
-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액 대비 초과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가. 세외수입 현황

(단위: 천원)

세입과목	세입항목	관련부서	예산액	수납액	과·부족	편성시기	비고
211-02	공 유 재 산 임 대 료	회 계 과	250,000	108,328	△141,672	본예산 3회추경	
	시 설 공 단 임 대 료	기획감사실	4,244	11,206	6,962	2회추경	
201-06	시 장 사 용 료	지역경제과	170,000	204,586	34,586	본예산 3회추경(△)	
202-09	야 영 장 사 용 료	원산도출장소 (現 원산출장소)	80,000	85,165	5,165	1회추경	
	목 재 문 화 체 험 장 료 시 설 사 용 료	산림공원과	40,000	49,890	9,890	2회추경 3회추경(△)	
213-01	증 지 수 입	민원지적과 (現 열린민원과)	270,000	312,945	42,945	본예산 3회추경	
221-02	도유재산 매각수입	회 계 과	16,301	16,301	0	3회추경	
221-04	불 용 품 매 각 대 금	회 계 과	69,492	57,850	△11,642	3회추경	
	관 용 차 량 매 각	보 건 소	9,325	9,325	0	3회추경	
	차 량 매 각 대 금	농업기술센터	1,600	1,897	297	3회추경	
	크 레 인 고 철 매 각 대 금	농업기술센터	297	297	0	3회추경	
	불 용 농 기 계 매 각 대 금	농업기술센터	9,090	1,868	△7,222	3회추경	
224-06	지 연 배 상 금	회 계 과	3,818	9,611	5,793	3회추경	
224-07	부 가 가 치 세 환 급	회 계 과	50,000	0	△50,000	본예산	
231-01	무 단 방 치 차 량 범 칙 금	교 통 과	1,000	1,000	0	3회추경	
	책임보험미가입차량 범 칙 금	교 통 과	8,000	8,900	900	3회추경	
234-01	자 동 차 검 사 지 연 과 태 료	민원지적과 (現 열린민원과)	90,000	74,463	△15,537	본예산 3회추경	
234-02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 태 료	민원지적과 (現 열린민원과)	20,000	9,325	△10,675	본예산	
	택 시 운 송 사 업 과 태 료	교 통 과	2,575	2,575	0	3회추경	

나.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세외수입재원이 있는 각 부서에서는 세입예산 과목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실태파악과 과거 3-5년간 정도의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가능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예산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예산편성 후 연중 변동사항 파악을 소홀히 하여 세수 부족을 초래하는가 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3회추경(정리추경)에 일괄 반영함으로써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추계는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합리적으로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 되도록 세외수입 발생부서에서는 노력하여 세입이 결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 예견 가능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적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예산 편성이 원칙)에 예산편성토록 조치하고 세입예산을 방치하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외수입 징수관리 철저

가. 세외수입 현황

(1) 연도별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수납액						미납율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2	74,866	57,817	1,493	56,324	526	18,016	24.0
2021	63,564	57,658	4,945	52,713	390	10,461	16.5
2020	58,551	51,083	1,248	49,835	203	8,513	14.5

(2) 2022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천원)

세입과목	미수납액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자금압박	납기미도래	비고
계	18,016,078	514,079	428,106	6,595,491	1,104,103	1,208,359	8,165,940	
재산임대수입	191,267			82,083			109,184	
사용료수입	310,310			299,713			10,597	
수수료수입	178,800			89,235			89,565	
이자수입	3,169			2,812			356	
보조금반환수입	271,840			264,777			7,063	
기타수입	8,243,208			682,079			7,561,130	
지난년도수입	7,101,324	514,079	428,106	3,846,677	1,104,103	1,208,359	-	
과징금	251,413			118,230			133,183	
이행강제금	270,687			252,640			18,047	
변상금	53,739			53,633			106	
과태료	366,636			315,046			51,590	
환수금	15,207			15,207			-	
부담금	758,478			573,359			185,119	

○ 세입과목별 미수납 소관부서 현황

세 입 과 목	소 관 부 서	비고
계	총 21개 부서	
재 산 임 대 수 입	교육체육과(現 체육진흥과), 회계과, 건설과, 도로과, 수산과	
사 용 료 수 입	교육체육과(現 문화교육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로과, 해양정책과, 수산과	
수 수 료 수 입	환경보호과	
이 자 수 입	농업기술센터	
보 조 금 반 환 수 입	교육체육과(現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現 가족지원과), 지역경제과	
기 타 수 입	기획감사실, 건축허가과(現 토지정보과/건축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지 난 년 도 수 입	세무과	
과 징 금	사회복지과(現 경로장애인과), 민원지적과(現 토지정보과)	
이 행 강 제 금	건축허가과(現 건축과)	
변 상 금	지역경제과, 건설과, 해양정책과,	
과 태 료	민원지적과(現 열린민원과), 건축허가과(現 건축과), 교통과, 수산과	
환 수 금	건축허가과(現 건축과)	
부 담 금	민원지적과(現 토지정보과), 건축허가과(現 신속허가과)	

나. 문제점

- 2022년도 결산기준 우리 시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입수입은 132,682백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56,324백만원 (42.5%)으로 세입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미수납액을 보면 위 현황과 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2년의 경우 24.0%에 달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세외수입은 납부저항으로 징수에 어려움은 있다 하겠으나 행정의 반대급부적 성격의 세외수입(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등)은 상대적으로 부과 징수에 따른 민원이나 저항이 적어 징수가 용이함에도 미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과년도분의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세무과에 세외수입채납팀을 설치하고 징수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나 2022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지난년도 수입은 사유별로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당해연도 분은 미수납액 전액의 사유가 납세태만으로 분류하고 있어 징수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부과 즉시 납기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미납분에 대하여는 연도내에 징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미납원인 분석 등에 철저를 기하여 맞춤형 징수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이월된 세외수입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결손사유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적기에 결손처분 하는 등 누적 미납액 관리에 따른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입금 환급 최소화

가. 세입금 환급 현황

(1) 연도별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별	환급총액 (A)	행정기관 착오			비 율 (B/A)	비 고
		소 계(B)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2	4,165,450	23,964	23,892	72	0.57	
2021	7,180,814	233,365	233,084	281	3.25	
2020	7,013,390	102,368	102,368	0	1.46	

(2) 2022년 행정기관 착오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 천원)

회 계 구 분	세 입 과 목	환 급 액	관 련 부 서	비고
	합 계	23,964	총 18개 부서	
일반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1,830	웅천읍, 오천면, 천북면, 산림공원과	
	도로사용료	108	도로과	
	기타사용료	1,389	웅천읍, 홍보미디어실, 교육체육과(現 문화교육과)	
	증지수입	65	웅천읍, 천북면, 청소면, 미산면	
	기타이자수입	1,184	교통과, 에너지과, 사회복지과(現 경로장애인과), 환경보호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0,467	사회복지과(現 경로장애인과)	
	그외수입	3,005	웅천읍, 주교면, 주민생활지원과(現 복지정책과)	
	지난연도 수입	2,014	오천면, 성주면, 건축허가과(現 건축과)	
	과징금	500	민원지적과(現 열린민원과)	
	이행강제금	961	건축허가과(現 건축과)	
	차량관련 과태료	2,289	민원지적과(現 열린민원과)	
	기타과태료	80	사회복지과(現 경로장애인과)	
주차장설치사업	기타과태료	72	교통과	

나. 문제점

- 세입행정 추진과정에서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청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세입된 재원의 환급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환급은 전무하여야 정상적인 세입행정이라 판단됩니다.
- 위 현황과 같이 최근 3년간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세입금 환급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적으로나 비율면에서 괄목할 만하게 줄어들고 있어 고무적이라 사료되나 아직도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적용세율 착오 등의 사유로 2022년도에 23,964천원의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은 조세민원 야기 및 행정기관 불신과 함께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부과에 앞서 관련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고 해당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존재원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가. 의존재원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과·부족	비고
합 계	38,306	51,165	12,859	
지 방 소 멸 대 응 기 금 (321-01)	1,500	5,400	3,900	
소 계	36,806	45,765	8,959	
시·군 일반조정교부금(421-01)	29,758	35,426	5,668	
시·군 특별조정교부금(421-02)	2,165	5,605	3,440	
시·군기타재원조정수입(421-03)	4,883	4,734	△149	

○ 관련부서: 기획감사실, 대외협력과, 세무과

나. 문제점

-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의 경우 의존재원은 재정운용의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면서 자주재원 성격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조정교부금은 교부와 함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에 완벽을 기하여 예산으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인구소멸지역의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2022년 처음 도입된 예산제도로 2022. 9. 1 관련 예산이 교부결정되었음에도 총예산 5,400백만원 중 1,500백만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900백만원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조차도 미편성 하였습니다.

- 시·군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도의 세입재원 중 일정비율이 우리 시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활용하여야 하나 일부 세입과목은 세입결손되고 일부 세입과목은 세입예산을 부족 편성하여 道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중 8,959백만원이 예산액 대비 과다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 특히,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시급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교부받은 재원으로 2022. 7. 12.에 1건 100백만원과 2022. 10. 31.에 6건 2,490백만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3회추경(예산안 의회제출: 11. 18., 수정예산안 의회제출: 12. 7.)에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7건 2,590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누락하였습니다.
- 이로 인하여 활용가능한 세입재정을 사장시키고 순세계잉여금 처리함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교부된 의존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적기에 예산을 편성 현안사항을 적기에 해결하는 등 관련 예산이 소정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여 주시고
- 시·군조정교부금에 대하여는 道의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교부시기를 사전에 파악 교부 예정된 교부금에 대하여 적기에 예산을 성립시키도록 하고 연말 정리추경 후에 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세 비과세 · 감면 대상 최소화 노력

가. 비과세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21년(결산)	2022년(결산)	증 감 액	비 고 (2022년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비과세·감면액(A)		11,815,730,420	12,539,559,980	723,829,560		
	비 과 세	9,391,058,770	10,269,050,620	877,991,850		
	감 면	2,424,671,650	2,270,509,360	△154,162,290	주민세	117,528,500
					재산세	11,884,533,020
					자동차세	537,498,460
지방세 징수액(B)		68,854,257,810	76,361,627,380	7,507,369,470		
비과세 감면율 (A/A+B)		14.6	14.1			

나. 문제점

- 2022년도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은 12,539,559,98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금 1,243,240,053,554원의 1.0%, 지방세 징수액 76,361,627,380원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대비 지방세 감면 부분은 6.4% 감소하였으나 비과세 부분은 9.3%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주재원인 지방세입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이 바람직하나 일정 부분을 비과세 · 감면이 차지하고 있어 자체수입의 잠식과 함께 지방세 기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세 부과시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세원에 대해 비과세·감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 법규연찬을 통하여 법령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에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

가. 2022년도 성과 달성률 50% 미만 현황

소 관 부 서	성 과 지 표	성과목표	성과달성	달성률
합 계	총 5개 부서 / 12개 사업			
안전 총괄과	취약계층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가입자수)	2,500	1,146	46%
문화새마을과 (현새마을공동체과)	총 효 예 교 실 운 영 (회)	16	0	0%
지역경제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회)	3	0	0%
	관창일반 산업단지 관리 (백 만 원)	500	100	20%
	기업애로 해소 사업 (백 만 원)	400	0	0%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백만원)	500	238	48%
	동백관 시설 이용자 수 (명)	20,000	7,240	36%
에너지과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	70	10	14%
	해상풍력 단지개발지원 용역 추진율(%)	50	0	0%
	폐광기금 개발사업 (%)	50	10	20%
	발전소 주변지역 추진 (백 만 원)	8,500	3,929	46%
건축허가과 (현신속허가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률 (%)	3	0	0%

나. 2022년도 성과 달성률 200% 초과 현황

소 관 부 서	성 과 지 표	성과목표	성과달성	달성률
합 계	총 3개 부서 / 4개 사업			
문화새마을과 (현새마을공동체과)	보령박물관 관람객 증가율 (%)	5	15	300%
에너지과	자동차 배터리사업 기반 구축 추진율(%)	20	100	500%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백만원)	83	204	246%
건설과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명)	2,000	4,073	203%

다. 문제점

- 2022년도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결과를 보면 달성률 최소 0%부터 최대 500%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성과지표 및 그 목표를 형식적으로 산정하여 지표 설정이 부적정했거나 적정하더라도 목표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보고서는 성과 측정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사업 및 예산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선정하고 성과지표 및 측정방식을 일관성 있게 설정하여 부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 변경 지양

가. 5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

(단위: 천원, %)

연번	소관부서	공사명	변경전 계약액	변경후 계약액	증감율
합	계	총 7개 부서 / 16개 사업	1,257,096	2,188,850	82.1
1	교육체육과 (現 체육진흥과)	웅천생활체육공원 스포츠조명 추가 설치공사	19,800	36,486	84.3
2	건설과	장현2리(384-5) 용수관 정비공사	22,716	47,241	108
3		오아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특허)(1차분)	457,394	816,752	78.6
4		평라리 인도 설치공사	29,829	53,003	77.7
5		신흥8통 마을회관 보수공사(건축공사)	38,109	67,687	77.6
6		창암3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35,500	58,740	65.5
7		신흥1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14,400	22,080	57.7
8	도로과	미산204호(소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17,036	45,858	169.2
9		국도36호(화산사거리) 인도정비공사	27,773	45,539	56.8
10	교통과	대천2동(시가지) 공영주차장 지장물 철거공사	55,246	143,160	159.1
11		공공형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전기공사	10,886	18,077	66.1
12		박람회 임시주차장(제4주차장) 조성공사	265,722	409,558	54.1
13	해양정책과	대멸선착장 확장 및 보강공사	26,412	49,260	86.5
14	박람회지원단 (現 신산업전략과)	박람회 교통안전 및 부대시설물 설치공사	96,132	161,307	67.8
15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공사	120,934	184,640	52.7
16	수산과	주교어촌계 양식어장 진입로 정비공사	19,207	29,462	53.4

나. 문제점

- 설계변경은 당초의 계약을 변경시키는 행위로써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누락, 오류, 시공 중 예기치 못했던 민원의 발생(보상, 공사 추가 요구 등) 별도의 추가 공사로 시공해야 함에도 설계 변경으로 추진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 대부분 공사 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재원의 추가 부담을 가져와 과도한 공사비 증액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 당초 사업계획 수립 또는 설계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과도한 공사비가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 사업 및 회계부서에서도 철저한 검토로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 공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최소화 노력

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회계연도	2020년 (A)	2021년 (B)	2022년 (C)	증 감 율	
					B/A	C/B
합	계	7,972	13,749	13,987	72.46	1.73
국	비	5,774	7,244	8,706	25.45	20.51
도	비	2,198	6,505	5,281	195.95	△18.81

나. 국·도비 반환금 1억원 이상 사업 현황(2022년)

(단위: 백만원)

소 관 부 서	세 부 사 업 명	교 부 액	국·도비반환금	비 고
합 계		119,506	5,801	
관 광 과	용두 해안길 관광기반 조성(도 전환)	1,200	1,200	現 신산업전략과
사 회 복 지 과	기 초 연 금 지 급	59,620	499	現 경로장애인과
수 산 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418	418	
주민생활지원과	상 생 국 민 지 원 금	17,850	323	現 복지정책과
사 회 복 지 과	보 육 교 직 원 인 건 비 지 원	2,207	276	現 가족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생 계 급 여	12,574	272	現 복지정책과
보 건 소	치 매 안 심 센 터 운 영 지 원	560	254	
사 회 복 지 과	영 유 아 보 육 료 지 원	4,624	254	現 가족지원과
자 치 행 정 과	코로나19관련 충청남도-보령시 재난지원금	2,062	226	
주민생활지원과	추 가 상 생 국 민 지 원 금	1,235	196	現 복지정책과
사 회 복 지 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	324	182	現 경로장애인과
수 산 과	조 건 불 리 지 역 수 산 직 불 제	535	166	
사 회 복 지 과	노 인 맞 춤 돌 봄 서 비 스 사 업 지 원	397	160	現 경로장애인과
지 역 경 제 과	희 망 근 로 지 원 사 업	904	154	
사 회 복 지 과	새 일 센 터 지 정 운 영	319	144	現 가족지원과
해수욕장경영과	해 수 욕 장 방 역 대 책 (물 품)	400	137	
에 너 지 과	수 소 연 료 전 지 차 보 급 사 업	225	135	
사 회 복 지 과	아 이 돌 봄 지 원	610	128	現 가족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권 교대인력 지원	122	122	現 경로장애인과
건 축 허 가 과	주 거 급 여 사 업	2,808	122	現 건축과
사 회 복 지 과	장 애 인 거 주 시 설 운 영 지 원	6,305	116	現 경로장애인과
	보 육 교 직 원 처 우 개 선 지 원	721	112	現 가족지원과
	보 육 특 수 시 책 사 업 지 원	349	105	現 가족지원과
	아 동 수 당 지 원	3,137	100	現 가족지원과

다. 문제점

- 2022회계연도 국·도비 확보액은 192,721,354천원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집행잔액으로 13,987,886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시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사업은 국가 등의 자원을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보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그로 인한 사업 성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 보조금 사업을 선정하는데 예산 수립전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세밀한 분석으로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가.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1억 이상)

(단위: 백만원, %)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사유	불용율
합 계	15개 사업	48,198	36,431	7,128	4,639	-	9.6
자치행정과	조 직 운 영 관 리	1,030	893	0	137	지 출 잔 액 및 낙 찰 차 액	13.3
주 민 생 활 지 원 과 (現복지정책과)	보 훈 대 상 자 지 원	2,494	2,381	0	113	지 출 잔 액	4.5
지역경제과	지 역 사 랑 상 품 권	714	575	20	119	지 출 잔 액	16.6
건 설 과	수 리 시 설 및 방 조 제 개 보 수	2,268	1,873	0	395	지 출 잔 액 및 낙 찰 차 액	17.4
	용 배 수 로 정 비	3,897	3,632	0	265		6.8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1,091	870	0	221		20.2
	소 규 모 주 민 숙 원 (읍 면 동) 사 업	9,623	6,913	2,051	659		6.8
	소 하 천 정 비	2,050	1,140	799	111	지 출 잔 액	5.4
도 로 과	도로유지보수 사업	2,967	2,622	140	205	지 출 잔 액 및 낙 찰 차 액	6.9
교 통 과	시 내 버 스 공 영 차 고 지 조 성	5,684	3,784	1,396	504	지 출 잔 액	8.8
수 도 과	도 서 지 역 식 수 원 개 발 (자 체)	1,539	1,270	146	123	지 출 잔 액	7.9
보 건 소	인 력 운 영 비	7,722	6,870	0	852	지 출 잔 액	11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지 위 원 회 운 영 비	160	51	0	109	지 출 잔 액	68.1
	삼광벼 재배단지 지원 (농 업 정 책 과)	519	337	0	182		35
	가 축 분 뇨 에 너 지 화 시 설 지 원 (축 산 과)	6,440	3,220	2,576	644		10

나. 문제점

- 2022년도 1억원 이상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9개 부서 15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불용율이 적게는 4.5%부터 많게는 68.1%까지 발생하였습니다.
- 이는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정리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주요업무 적극 추진

가. 주요업무 진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진율							
건수	합계	100%		60%이상		50%이하			
						사업완료기간			
						2023년까지		2023년이후	
		건수	소계	건수	소계	건수	소계	건수	소계
46	114,085	11	12,446	11	42,384	7	25,323	17	33,932

※ 주요업무: 시설공사 20억 이상, 조사·연구 용역사업비 건당 3억 이상

나. 문제점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시설사업 20억 이상, 용역 3억 이상인 사업으로 다년간에 걸쳐 공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 등 11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민원 종합센터 신축 등 28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보령 배드민턴구장 건립사업 등 7개 사업은 사업 준공 예정일이 2023년까지임에도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주요사업은 보령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과 함께 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 사업계획 수립단계와 예산 편성시부터 정밀 검토하고, 책정된 사업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을 부진 사업 현황

(단위: %)

연번	소 관 부 서	세 부 사 업	추진율	사 업 기 간
1	교 육 체 육 과 (現 체육진흥과)	보령 배드민턴구장 건립사업	20	2020-01-01~2023-12-31
2	도 로 과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20	2017-10-01~2023-12-30
3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개설(계속비)	15	2020-01-01~2023-12-30
4	에 너 지 과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12	2020-11-01~2022-12-31
5	도 로 과	원산도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도 전환)(전환사업)	10	2020-01-01~2023-12-31
6	관 광 과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10	2019-01-01~2023-12-31
7	건 설 과	폐광기금사업(성주 생태 하천 조성)	5	2012-01-01~2022-12-31

12. 예산 전용 지방

가. 예산 전용 현황(1천만원 이상)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합 계				1,329	486	486		
1	교 육 체 육 과 (現 체육진흥과)	아시안컵 보령 국제 요트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100	92		22-06-23	홍보비 사용
			사무관리비 (201-01)			92		
2	환 경 보 호 과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지원	행사운영비 (201-03)	263	263		22-05-25	민간위탁으로 변경 추진
			민간위탁금 (307-05)			263		
3	건 설 과	하천유지 및 보수	사무관리비 (201-01)	163	40		22-11-02	낙상방지를 위한 동대교 개선공사 추진
			시설비 (401-01)	431		40		
4	도 시 재 생 과 (現 새마을공동체과)	선행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90	84		22-05-04	주민역량 강화 컨설팅 및 교육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84		
5	관 광 과	국내 외 관광객 유치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30	10		22-05-04	시티투어 사업 직접 수행
			사무관리비 (201-01)	525		10		

나. 문제점

- 위 현황과 같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결과이고
- 예산의 성립 이후 예산 증감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됩니다.
-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는 등 전용 제도의 활용은 가급적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사업 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 예산의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13.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가. 세출예산 이월 필요성

-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2022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회 계 별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비고
합	합 계	337,704,279	109,802,165	32.5	
	명시이월	241,209,584	92,527,521	38.3	
	사고이월	96,494,695	17,274,644	17.9	
일 반 회 계	소 계	289,521,184	98,791,175	34.1	
	명시이월	212,286,003	83,122,191	39.1	
	사고이월	77,235,181	15,668,984	20.2	
상 수 도 사 업	소 계	28,081,357	7,218,876	25.7	
	명시이월	15,359,388	6,090,483	39.6	
	사고이월	12,721,969	1,128,393	8.8	
하 수 도 사 업	소 계	13,450,731	2,888,533	21.4	
	명시이월	7,198,186	2,429,051	33.7	
	사고이월	6,252,545	459,482	7.3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소 계	570,000	37,785	6.6	
	명시이월	285,000	20,000	7	
	사고이월	285,000	17,785	6.2	
주 차 장 설 치 사 업	소 계	134,122	26,775	19.9	
	명시이월	134,122	26,775	19.9	
	사고이월	0	0	-	
학 교 급 식 지 원 센 터	소 계	5,946,885	839,021	14.1	
	명시이월	5,946,885	839,021	14.1	
	사고이월	0	0	-	

다. 문제점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연말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 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2022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109,802,16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 5억 이상 전액 이월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소 관 부 서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비고
총 8개 부서 / 12개 사업				10,349,639	10,349,639	
1	건 설 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특)	시 설 비	1,500,000	1,500,000	명시
2	산 림 공 원 과	조손 세대공감 공원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시 설 비	1,500,000	1,500,000	명시
3	관 광 과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사업 (판옥선 복원)(도전환)(전환사업)	시 설 비	1,500,000	1,500,000	명시
4	원 산 도 출 장 소 (現 원산출장소)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시 설 비	1,073,520	1,073,520	명시/사고
5	도 시 재 생 과 (現 새마을공동체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시 설 비	783,000	783,000	명시/사고
6	교 육 체 육 과 (現 체육진흥과)	보령시 북부권역 체육공원 조성	시 설 비	600,000	600,000	명시
7		웅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 설 비	600,000	600,000	명시
8	건 설 과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시 설 비	596,220	596,220	명시
9	지 역 경 제 과	웅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시 설 비	579,899	579,899	사고
10	도 로 과	명천1통(소2-49) 도시계획도로개설	시 설 비	550,000	550,000	명시
11	지 역 경 제 과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설 비	540,000	540,000	명시
12	산 림 공 원 과	모란공원 제3봉안당 신축사업	시 설 비	527,000	527,000	명시

14. 예산 이월에 따른 사고이월 처리 절차 노력

가. 사고이월 현황

(단위: 천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집 행 액	사 고 이월액
합 계		1,258,985	313,772	61,452	1,010,532
환 경 보 호 과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56,000	7,000	7,000	42,000
지 역 경 제 과	웅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579,899	190,474	0	579,899
도 시 재 생 과 (現 새마을공동체과)	성동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280,000	61,846	0	100,000
도 로 과	주산101호(창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0,000	4,452	4,452	145,547
해 양 정 책 과	지 역 경 관 개 선	35,686	0	0	35,686
수 산 과	어 촌 체 험 휴 양 마 을 조 성	40,000	0	0	40,000
	육상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117,400	50,000	50,000	67,400

나. 문제점

- 세출예산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 위 현황과 같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하여 착오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 예산의 이월 처리시 명시 및 사고이월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이월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 예산부서에서는 이월사업 검토시 정확성을 기하여 이월사업 처리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이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특별회계 이월사업 이월사유 누락

가. 이월사유별 현황

(1) 명시이월(상수도 사업)

(단위: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명 시 이월액	이월 사유
회계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6건			15,359,388	8,329,196	8,095,704	6,090,483	
상수도 사 업	상하수도 ·수질	지 방 상 수 도 시 설 공 사	시 설 비	9,508,828	5,967,267	5,798,369	2,773,536	누락
		노 후 상 수 도 시 설 개 량 사 업	시 설 비	714,000	467,022	402,428	193,571	
		노 후 정 수 장 정비	시 설 비	660,000	345,655	345,655	196,120	
		스 마 트 관 망 관 리 인 프 라 구 축	공기관등 에 대 한 자본위탁 사 업 비	3,684,000	1,296,186	1,296,186	2,387,814	
		원 격 검 침 시 스 템 구 축	시 설 비	498,560	253,066	253,066	245,442	
		보 전 지 출	시 도 비 보 조 금 반 환 금	294,000	-	-	294,000	

(2) 명시이월(하수도 사업)

(단위: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명 시 이월액	이월 사유
회계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4건			7,198,186	6,583,077	4,036,635	2,429,051	
하수도 사 업	상하수도 ·수질	하 수 도 시 설	시 설 비	918,400	917,080	403,975	418,194	누락
		하 수 도 시 설	시 설 부 대 비	27,241	1,232	1,232	1,880	
		공 공 하 수 처 리 시 설	시 설 비	5,186,997	5,186,997	3,153,660	1,647,971	
		보령시 노후하수관로 정 밀 조 사	시 설 비	1,065,548	477,768	477,768	361,006	

(3) 사고이월(상수도사업)

(단위: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 사유
회계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4건			12,721,969	9,141,228	7,956,000	1,128,393	
상수도 사업	상하수도 ·수질	지 방 상 수 도 시 설 공 사	시 설 비	9,508,829	5,967,267	5,798,369	107,792	누락
		웅천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 사 (전 환 사 업)	시 설 비	2,621,280	2,604,770	1,882,170	722,599	
		웅천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 사 (전 환 사 업)	감 리 비	550,910	550,910	257,180	293,730	
		창동 노후 정수시설 개 량	시 설 부 대 비	40,950	18,281	18,281	4,272	

(4) 사고이월(하수도 사업)

(단위: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 사유
회계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2건			6,252,545	5,664,765	3,631,427	459,482	
하수도 사업	상하수도 ·수질	공 공 하 수 처 리 시 설	시 설 비	5,186,997	5,186,997	3,153,659	232,708	누락
		보령시 노후하수관로 정 밀 조 사	시 설 비	1,065,548	477,768	477,768	226,774	

(5) 계속비이월(상수도 사업)

(단위: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 사유
회계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9건			27,260,883	22,793,152	22,793,152	4,458,803	
상수도 사업	상하수도 ·수질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오천(원산도, 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시 설 비	6,979,406	5,634,643	5,634,643	1,344,762	누락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오천(원산도, 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시 설 부 대 비	32,006	11,734	11,734	17,320	
		미 산 농 어 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전 환 사 업)	시 설 비	5,561,474	4,153,826	4,153,826	1,407,648	
		미 산 농 어 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전 환 사 업)	감 리 비	138,530	-	-	138,530	

		도 서 지 역 식 수 원 개 발	시 설 비	1,337,000	968,930	968,930	368,070	
		창 동 노 후 정 수 시 설 개 량	시 설 비	10,918,906	9,989,815	9,989,815	929,091	
		창 동 노 후 정 수 시 설 개 량	감 리 비	1,652,611	1,503,642	1,503,642	148,969	
		창 동 노 후 정 수 시 설 개 량	시 설 부 대 비	40,950	18,281	18,281	16,694	
		성 주 정 수 개 량 사 업	시 설 비	600,000	512,281	512,281	87,719	

(6) 계속비이월(하수도 사업)

(단위: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 사유
회계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20건			30,329,230	22,082,963	20,099,003	10,100,226	
하수도 사업	상하수도 ·수질	성주 공공하수처리 시 설 설 치	시 설 비	5,419,097	4,878,093	4,878,093	541,004	누락
		성주 공공하수처리 시 설 설 치	감 리 비	641,100	173,518	173,518	467,582	
		성주 공공하수처리 시 설 설 치	시 설 부 대 비	1,369	386	386	983	
		원산도 농어촌마을 하 수 도 정 비	시 설 비	2,861,186	2,850,721	2,850,721	10,465	
		원산도 농어촌마을 하 수 도 정 비	감 리 비	400,000	320,000	320,000	80,000	
		원산도 농어촌마을 하 수 도 정 비	시 설 부 대 비	4,344	2,082	2,082	2,262	
		국도 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시 설 비	7,890,026	7,890,026	5,906,066	1,983,960	
		국도 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감 리 비	300,800	285,900	285,900	14,900	
		국도 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시 설 부 대 비	5,988	5,715	5,715	273	
		청라 의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시 설 비	6,749,843	3,572,450	3,572,450	3,177,393	
		청라 의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감 리 비	910,438	495,000	495,000	415,438	
		청라 의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시 설 부 대 비	211	200	200	12	
		흑포, 사곡처리분구 (강양마을) 하수관거정비	시 설 비	1,764,936	637,291	637,291	1,127,645	
		흑포, 사곡처리분구 (강양마을) 하수관거정비	감 리 비	360,000			360,000	
		흑포, 사곡처리분구 (강양마을) 하수관거정비	시 설 부 대 비	1,338	1,101	1,101	237	

	웅천 성동, 노천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	시 설 비	821,570	592,591	592,591	228,978
	웅천 성동, 노천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	시 설 부 대 비	1,430	1,000	1,000	430
	주교. 동대처리분구 (평산마을) 하수관로 설치	시 설 비	1,022,370	353,879	353,879	668,491
	신대리 및 강당마을 하수관로 정비	시 설 비	1,169,523	22,010	22,010	1,017,513
	신대리 및 강당마을 하수관로 정비	시 설 부 대 비	3,660	1,000	1,000	2,660

다. 문제점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하므로 전기 당기 이월사업을 파악 후 비교 검증하고
-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하는 경우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이월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에도 이월사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라.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특별회계 이월사업 편성시 사업계획에 따라 이월사업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사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16. 운용 부진한 기금의 활성화 노력 필요

가. 기금 운용 현황

(단위: 원, %)

운용관서	기 금 명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사용률
			사 용 액	잔 액	
합	계	20,634,947,724	1,432,773,050	19,202,180,674	6.9
안전총괄과	재 난 관 리 기 금	2,801,008,628	214,885,640	2,586,122,988	7.6
교육체육과 (現 체육진흥과)	체 육 진 흥 기 금	1,300,485,914	0	1,300,485,914	0
주민생활지원과 (現 복지정책과)	자 활 기 금	645,972,073	58,200,000	587,772,073	9
사회복지과 (現 경로장애인과)	노 인 복 지 기 금	881,884,490	20,000,000	861,887,490	2.3
사회복지과 (現 가족지원과)	양 성 평 등 기 금	745,752,312	10,000,000	735,752,312	1.3
환경보호과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 변 지 역 지 원 기 금	1,087,371,007	64,957,100	1,022,416,907	6.0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400,000,000	0	400,000,000	0
	투 자 유 처 기 금	5,717,058,170	491,391,510	5,225,666,660	8.6
보건소	식 품 진 흥 기 금	257,755,570	58,338,800	199,416,770	22.6
농업기술센터	농 어 촌 진 흥 기 금	6,797,659,560	515,000,000	6,282,659,560	7.6

나. 문제점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기금은 궁극적으로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는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 2022년도 기금조성액 및 사용액 그리고 잔액을 살펴보면 기금 운용 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4개의 기금은 5% 미만의 사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 개선 및 권고사항

- 전반적인 기금 운용 실적이 저조하고 설치 목적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에
- 사용률이 극히 저조(5% 미만)한 부서에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모 범 사 례

BORYEONG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 【수산과】

가. 사례개요

- 수산과에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 활동을 펼쳐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고 총 443억 원(국·도비 309억 원)의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소멸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하여 있는 현실에서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어촌의 삶의 질 수준 향상과 더불어 생활인구 증대,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추진상황

-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소멸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하여 있는 어촌에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을 통한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자체재원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 2022년 9월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계획 공고에 따라 2022년 11월 공모를 접수하였고, 2023년 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유 형	어촌 경제플랫폼	어촌 생활플랫폼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선 정 지	삼시도항	송학항	죽도항
사업내용	지방어항 중심 어촌 경제거점 조성 (수산물플렉스, 청년주거단지,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 등)	소규모 항포구 중심 어촌마을 생활경제수준 향상 (시설정비, 경관개선 등)	소규모 안전수준 확보 (어선 계류시설 신설 등)
사 업 비	총 297억 원 (국 148, 도 45, 시 104)	총 96억 원 (국 67, 도 9, 시 20)	50억 원 (국 35, 도 5, 시 15)

다. 기대효과

-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여 경제·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할 수 있으며,
- 누구나 살고, 일하고, 머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촌 조성을 통해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수행에 따른 예산 절감

【도시재생과】

가. 사례개요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9.7.1.)에 따라 연면적 660㎡이상의 건축물은 그전 일반감리 또는 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감리를 하게 되어 용역비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부서 인력을 활용하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국토부 업무대행) 승인을 얻어 직접감독을 수행하여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나. 추진상황

- 그간 특별한 용도의 건축공사 연면적 5,000㎡은 상주감리, 건축공사비 20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여 건설사업관리감리를 시행하였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연면적 660㎡이상 모든 건축공사는 현장에 모든 공정의 감리자를 상주하게 하는 건설사업관리감리를 의무로 적용하게 되어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에 따라 위반시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의 필요성으로 건설사업관리 감리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연차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중인 부서에서는 추가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에서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부서가 건설사업 관리용역과 비등한 인력이 확보되었으면 국토교통부 업무대행 기관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승인을 얻어 직접감독(감리)을 수행할 수 있기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직접감독(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상당한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현황 및 예산절감 비용

(단위: 천원)

공 사 명	규모(㎡)	건축공사비	건설사업 관리비	직 용 감리비	절감액	협 회 승인일
계	24,474.28	3,913,264	1,347,549	121,657	1,225,892	
도시재생 보령아지트 신축공사	679.28	2,117,114	603,760	21,763	581,997	2022. 11. 22.
보행친화형 가로환경 조성공사	21,154	1,136,010	376,804	99,894	276,910	2023. 1. 11.
대천천수변체육공간 조성공사	2,641	660,140	366,985	-	366,985	2023. 1. 17.

다. 기대효과

- 건설공사 인건비 및 자재비가 상승하여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감리비까지 엄청난 비용이 상승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대재해법과 바쁜 행정업무 속에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부담을 이겨내고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었기에 이는 적극행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